

부가가치세법 제60조 [ 가산세 ]

\* 관련 집행기준 : 60-0-2 [ 가산세 종류 ]

(2014.11.30 개정)

관련 법	종 류	주 요 내 용	
국세 기본 법	무신고가산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부정무신고 :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 × 40%</li> <li>일반무신고 :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× 20%</li> </ul>	
	과소신고·초과환급신고 가산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부정과소·초과환급신고 :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× 40%</li> <li>일반과소·초과환급신고 :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× 10%</li> </ul>	
	납부·환급불성실가산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미납세액(초과환급받은 세액) × 경과일수 × 가산세율(1일 1만분의 3)</li> </ul>	
	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	무신고·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× 0.5%	
부가 가치 세법	미등록가산세	일반과세자	공급가액 × 1%
		간이과세자 (납부의무면제자 제외)	공급대가 × 0.5%
		간이과세자 (납부의무면제자)	과세기간별 5만원과 공급 대가의 0.5% 중 큰 금액
	타인명의등록가산세	공급가액 × 1% (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.5%)	
	세금계산서발급 및 전송 불성실 가산세	공급가액 × 0.5%(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제출) 공급가액 × 1%(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및 지연발급,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) 공급가액 × 2%(세금계산서 미발급)	
	세금계산서 부정수수 가산세	공급가액 × 2%(세금계산서 가공·위장 발급, 가공수취·타인명의 수취)	
	자료상 수수 세금계산서 가산세	공급가액 × 2%	
	세금계산서등경정기관 확인매입세액공제가산세	공급가액 × 1%	
	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	공급가액 × 1% (미제출,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 미기재·부실기재)	
		공급가액 × 0.5% [지연제출(예정분을 확정 시 제출)]	
	지연발급세금계산서매입 세액공제가산세	공급가액 × 1%	

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	공급가액 × 1% [미제출(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시 제외),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미기재·부실기재, 공급가액 과다기재]
현금매출·부동산임대공급 가액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 세	(미제출·과소제출) 수입금액 × 1%
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·미전송	지연전송 : 공급가액 × 0.5% 미전송 : 공급가액 × 1%

미등록가산세 계산사례

【거래 사례】

사업자 갑은 2015. 2. 4. 도매업을 개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아래와 같을 때 각 사례별 미등록가산세 계산방법

기 간	과세표준	매입금액
2015. 2.4. ~3.31.	100,000,000원	-
2015. 4.1. ~6.30.	400,000,000원	1,000,000,000원

【계산 방법】

1. 2015.

2. 24. 이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☞ 가산세 없음

2. 2015. 4. 1.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☞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1%를 곱한다.

$$100,000,000원 \times 1\% = 1,000,000원$$

3. 2015. 7. 1.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

$$500,000,000원 \times 1\% = 5,000,000원$$

타인명의등록가산세 계산사례

【거래 사례】

사업자 "갑"은 2014.1.1. 도매업을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을 "을"로 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·납부의무를 이행하여 오다가 2015.7.1. 관할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시 실사업자가 "갑"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타인명의등록가산세 계산 방법

과세기간	과세표준	매입금액
2014년 제1기	100,000,000원	40,000,000원
2014년 제2기	200,000,000원	100,000,000원

2015년 제1기

400,000,000원

200,000,000원

## 【계산 방법】

타인명의등록한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한다.

과세기간	계산산식	허위등록가산세액
2014년 제1기	100,000,000원 × 1%	1,000,000원
2014년 제2기	200,000,000원 × 1%	2,000,000원
2015년 제1기	400,000,000원 × 1%	4,000,000원

##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 계산 사례

## 【거래 사례】

2015년 10월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"갑"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시 2015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아래와 같은 사실이 적출된 경우 가산세 계산 방법

## 【계산 방법】

-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세금계산서 2매, 공급가액 5억원 적출  
 $500,000,000원 \times 1\% = 5,000,000원$  (세금계산서부실기재에 따른 가산세 적용)
-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누락되었으나, 나머지 기재사항(대표자, 사업장, 업태, 종목 등)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1매, 공급가액 1억원 적출  
 $\Rightarrow$ 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다.
- 2015년 제1기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, 공급가액 1천만원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 10매, 공급가액 5백만원이 확인되어 경정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.  
 $15,000,000원 \times 1\% = 150,000원$  (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공제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)

##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사례

## 【거래 사례】

의류를 제조하여 수출 및 국내에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"갑"이 2015년 제1기 과세표준이 아래와 같을 때 각 사례별 가산세 계산 방법

기 간	영세율 과세표준			과세표준 (국내판매분)
	㉠ 직수출	㉡ 내국신용장	㉢ 수출재화임가공	
2015. 4. 1 ~ 6. 30.	3억원	2억원	1억원	4억원

## 【계산 방법】

1. 2015년 제1기 확정신고 시 위 ㉠,㉡,㉢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여 2016.1.25.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(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한 것으로 가정한다)

☞  $6\text{억}\text{원} \times 0.5\% \times (1-50\%) = 1,500,000\text{원}$ (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50% 감면)

2. 2015년 제1기 확정신고 시 위 ㉠,㉡,㉢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여 2016.1.26. 이후 2016.7.25.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(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한 것으로 가정한다)

☞  $6\text{억}\text{원} \times 0.5\% \times (1-20\%) = 2,400,000\text{원}$ (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가산세 20% 감면)

3. 2015년 제1기 확정신고 시 영세율과세표준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,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수출실적명세서 및 수출재화임가공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2016.1.25.까지 수정신고하면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(다른 영세율 첨부서류는 정상 제출)

☞  $(3\text{억}\text{원} + 1\text{억}\text{원}) \times 0.5\% \times (1-50\%) = 1,000,000\text{원}$ (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,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)

4.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에 ㉠의 직수출금액을 5억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

☞ 영세율과세표준을 과다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5. ㉠의 직수출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여 2017.7.2

6. 이후 수정신고하는 경우

☞  $3\text{억}\text{원} \times 0.5\% = 1,500,000\text{원}$ (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)